

코로나19 관련 법률구조 지원 확대 실시

2020. 3. 9. 서울중앙지검

(개요 - 코로나19 상황 관련 법률상담팀 운영)

- 최근 코로나19 관련하여 마스크 대금사기 범죄피해자 등 사회·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법률구조 지원 필요성 증가
- 인권감독관이 인권보호 차원에서 기존 피해자지원센터 법무담당관(공익법무관)과 피해자 지원 전문인력을 활용, “코로나19 상황 관련 법률상담팀” 운영, 법률구조 지원 확대 실시

(구조 대상자를 확대하여 폭넓은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)

- 기존 범죄피해자 중심으로 해오던 법률구조 지원업무를 일반 민원인과 참고인,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으로 확대
- 형사, 민사, 가사, 행정, 헌법소원 등 법률구조가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 대해 전반적인 법률상담을 실시

(민·형사 관련 권리보호에 소홀함이 없는 법률상담 실시)

- 피해를 당한 경우 고소 가능 여부, 형사 사건 등에 관해 상담을 실시하고, 필요한 경우 고소 절차 안내, 형사배상명령 신청서 작성 방법 등 형사 사건 전문가로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법률상담 서비스 실시
 - ※ 특히, 코로나19 상황 관련,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마스크 대금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대처 요령 및 사후 권리구제 방안 집중 상담
- 피해회복을 위한 법원의 송무 업무는 전문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담당 부서를 안내하여 연결시켜 주고, 송무 일반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권리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

(긴급복지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연계하는 방안 확대 시행)

- 현재는 구속·검거된 피의자·미집행자 등을 상대로 가족의 생계곤란 등 위기 상황 여부를 확인하고 관할 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실시 중

- 법률상담을 통해 구조 대상자가 긴급복지지원법상 요건인 위기상황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신속하게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

긴급복지지원법상 위기상황(예시)

- ▶ 주소득자가 사망, 구급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
- ▶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
- ▶ 가족구성원으로부터 학대 등이나 가정폭력, 성폭력을 당한 경우
- ▶ 주소득자의 휴업으로 영업이 곤란하거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

(범죄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경제적 지원절차 마련)

- 코로나19 상황으로 더 큰 어려움이 예상되므로, 치료비, 생계비, 장례비 등 경제적 지원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여 제때에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

※ 법률구조 지원 부서 - 코로나19 상황 관련 법률상담팀

- 인권감독관 총괄지휘 하에 피해자지원센터 소속 법무담당관(공익법무관)과 피해자지원 전문인력 3명이 법률구조 지원업무 담당(총 5명으로 구성)

| 인권감독관(총괄) | |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피해자지원센터 소속 공익법무관 | 민,형사절차 등 법률상담 일반 | ☎ 02-530-4848,9 02-534-4901 |
| 피해자지원 전문인력 3명 | 경제적 지원, 구조금, 기타 피해자지원 사항 등 | ☎ 02-530-4272, 4287, 4384 |

- 코로나19 관련, 대면상담은 가급적 자제하고 유선상담을 원칙으로 하되, 긴급한 법률구조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약상담 진행 ▣